

상세설명 (*) 이탈리아 체류와 관련하여 재정수단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A.재정보증인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 (혈연), 인척 (결혼으로 인하여 얻은 식구) 중의 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여 더 이상 일을하지 않는 분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원이 있으면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득원이 있었거나 현재 소득원이 있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분이면 본인이 재정보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소득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금융기관의 월급입금내역 또는 연금수령증명서), 은행잔고와 통장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제출하시려는 통장의 금액이 부모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인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재정보증인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도 이탈리아 체류경비를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서류상에 나타나면 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하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장인이 딸과 사위 보증 또는 시아버님이 아들과 며느리보증)

1. 재정보증서

주의: 재정보증인이 사촌이상의 친척이거나 결혼으로 인하여 얻은 인척인 경우에는 본 대사관 담당자 앞에 오셔서 직접 서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증사무소에서 서명을 공증 (이탈리아인 담당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 두나라 말로 해달라고 하세요) 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2.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이면 앞뒤면의 사본 / 여권이면 서명 후 복사한 사본)

3. 직업관련 서류

영문재직증명서 (국문으로만 발급되는 경우 이탈리아어 번역문 첨부)
또는 영문사업자등록증명 등

4. 소득관련 서류

- 1) 6 개월간 입출금 통장내역: 이는 모든 재정보증인이 제출합니다.
- 2) 소득이나 재정상황이 여유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 납세증명 또는 금융기관의 월급입금내역 또는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또는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연금수령증명서 또는 직업이나 연금등의 소득이 없는 분은
금융기관의 안정적 예적금 증명서와 통장사본 등

5. 비자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전자정부가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1) 재정보증인이 부모형제자매 중 일인이면 재정보증인을
본인으로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 2) 재정보증인이 친척 또는 인척이면 재정보증인을 본인으로하여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비자신청자와 재정보증인이 친척
또는 인척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발급받으신 여러 증명서로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적호적등본은국적이
바뀐 분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접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비 유학 비자신청인 본인의 잔고증명서에는 1 년이상 체류하게되면
적어도 11.000 유로가, 6 개월을 체류하게되면 적어도 5.500 유로가 들어
있음이 잔고증명서에 나타나면 됩니다. 비자 기간 4 개월에서 1 년 사이라면
11.000 유로를 12 개월로 나누어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B. 확실한 이탈리아 교육기관이나 단체나 이탈리아 정부 또는 본 대사관이 신뢰할
만하다고 간주하는 외국 교육기관이나 단체가 발급한 재정보증서 또는 장학증서